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8형)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1. 관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961('21.1.28.)호, -962('21.1.28.)호, -965('21.1.28.)호, -963('21.1.28.)호, -964('21.1.28.)호, -966('21.1.28.)호, -967('21.1.28.)호, -968('21.1.28.)호, -969('21.1.28.)호
2. 서울 서대문구(홍제천)·마포구(불광천), 부산 사상구(낙동강하구)·사하구(다대포항), 경기 오산시(오산천)·김포시(계양천), 강원 영월군(송한천)·원주시(원주천), 충북 진천군(미호천), 경북 구미시(지산샛강), 제주 제주시(광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기에,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단체)별 방역조치 강화 내역

○ 검출 시·도(시·군) 및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방역대) 내 지자체

- 해당 방역대 내 기초치된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 지속 유지
 - * 해당 지역 내 가금 및 가금 생산물 이동 시 방역관리 철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6354('20.12.3.)호 참조]
-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개인 소독,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축사간 이동 시 전용장화 착용 등의 방역 수칙 홍보 및 지도·점검 철저
- 방역대 내 및 검출 시·군 관내 모든 가금농가 예찰·검사
 - * 검사방법: (닭) 임상검사, 전업농의 경우 폐사축(폐사축이 없을 경우 분변으로 대체)에 대한 간이키트검사 실시(필요 시 혈청검사)
(오리·기타가금류) 정밀검사(rt-PCR)
 - ※ 검사 결과는 우리 부 AI 상황실로 매일 18시까지 당일 실적 보고
-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진입금지 명령
-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포함된 시·군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진입금지 명령 조치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 운영 중단(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운영 중단함을 해당 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
- **검출 시·군**에서 타 지역(시·군·구)으로 나가는 축산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철저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수매·도태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외 지자체

-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지도·홍보
-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금지 권고
- * 축산법 상 등록 대상 이하 규모(50㎡ 이하)
-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은 살아있는 초생추·중추(모든 가금류 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 *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 금지 여부 주 1회 이상 확인
-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매주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출 시·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우리 부에 결과 보고
- * 5일장 형태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짜에 맞춰 현장 점검 추진
- 전국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방역 점검 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 여부 및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여부를 포함 점검하고, 그 결과는 매주 금요일 우리 부 SI 상황실로 보고

○ 환경부

- 「야생조류 S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 강화 및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조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모든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 실시 후 우리 부에 매일 14시까지 결과 보고

붙임 관련 공문 각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보건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제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강호성	서기관	대결 2021. 1. 29. 황성철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83	(2021. 1. 2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